

2026. 9.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 - 83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김진수, 김영자, 정경원
의원(3명)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의회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부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붙임자료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발췌문
- 마. 타 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 바.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 사.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관련 조례 현황
- 아. 현행 조례
- 자. 타 시·군의회 조례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u>

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 의정팀장 박성용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발췌문

8.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 평가대상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문제점

- ①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 경기 안양시 등은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고, 경기 양주시 등은 개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특정 위원회의 특권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장치 우회가 우려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 부실**
 - ※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기피 대상 위원은 당연히 제척되므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확인적 규정을 둠
 - 충남 논산시 등은 **회피 규정이 없거나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 ② 충남 서산시 등은 **해촉 규정 부재**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르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위원직을 유지하는 부조리 발생
- ③ 충북 영동군 등은 위촉위원의 **임기·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연임 제한을 하지 않아 장기 연임으로 인한 친소관계 형성 등 부패 우려
 - ※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 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 타 기관 우수사례

■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타 부서 의견조회 결과보고서

제28회 김제지명선출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의견 조회 결과보고

김진수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안명 :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조회 기간 : 2026. 8. 18. ~ 2026. 8. 24.(6일간)
3.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4183호(2026. 08. 18.)로 공문 협의
4. 의견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최대환	행정복지 전 문위원	김형원	의정팀장	대결 2026. 8. 25. 박성용	전결 의회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4323

접수

무 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김제시청)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2738 팩스번호 063-540-2777 / cdh7604@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희도시 김제

□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김진수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08. 18. ~ 2026. 08. 24.(6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최대한	행정복지 전 문위원	김형원	의정팀장	대결 2026. 8. 25. 박성룡	전결 의회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4325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김제시청)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2738	팩스번호	063-540-2777	/	cdh7604@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희도시 김제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제정 현황		비고
	여	부	
전북도의회		○	조례 없음
전주시의회		○	조례 없음
군산시의회		○	조례 없음
익산시의회		○	조례 없음
정읍시의회		○	조례 없음
남원시의회		○	조례 없음
완주군의회		○	조례 없음
진안군의회		○	조례 없음
무주군의회		○	조례 없음
장수군의회		○	조례 없음
임실군의회		○	조례 없음
순창군의회		○	조례 없음
고창군의회	○		
부안군의회		○	조례 없음

□ **현행 조례**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12.15 조례 제14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김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용역·공사”란 의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의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 관리,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

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의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의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하거나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구성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용역·공사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특성상 제1항의 적용으로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위원회는 그 대상과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정비)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

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의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타 시 · 군의회 조례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3.01.20 조례 제26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 투명성 ·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설치 ·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용역 · 공사”란 의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의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 관리,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

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의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② 의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4. 그 밖의 의회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하거나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

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공사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특성상 제1항의 적용으로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위원회는 그 대상과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③ 제13조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정비)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의장은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